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6. 7. 26.>

## 피해구제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			
	성 명				생년월일		
피해자	주 소						
	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	전자우편주소		
신청내용		금융회사		개설점포		세기조H	
	피해자 계좌의 송금 • 이체내역					예금종별	
		계좌번호				명의인	
		송금•이체일시		금액			
	사기이용계좌 입금내역	금융회사		계좌번호		명의인	
		입금일시		금액			
	피해환급금 입금계좌	금융회사		계좌번호		명의인	

## 피해구제 신청사유

※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 ○ ○ **금융회사** 귀하

첨부서류	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1부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